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파견법 시행령)



[시행 2020. 1. 16.] [대통령령 제30256호, 2019. 12. 24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 (고용차별개선과) 044-202-7569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6. 18., 2019. 10. 29.>
- **제2조(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)** ①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07. 6. 18., 2019. 10. 29.>
 -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개정 2007. 6. 18., 2019. 10. 29., 2019. 12. 24.>
 - 1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
 - 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
 - 3. 「의료법」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
 - 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
 - 5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
 - 6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
- **제2조의2(고용의무의 예외)**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4. 9. 24., 2019. 10. 29.>
 - 1. 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2. 천재·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[본조신설 2007. 6. 18.]
- **제3조(허가의 세부기준)**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. 6. 18., 2009. 6. 30., 2019. 10. 29.>
 - 1.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(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)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·국민연금·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
 - 2. 1억원 이상의 자본금(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)을 갖출 것
 - 3.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
- 제4조(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년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. <개정 2007. 6. 18., 2019. 10. 29.>
- 제4조의2(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)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0. 29.>
 - 1.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
 - 2.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
 - 3.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
 - 4.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
 - 5. 연장・야간・휴일근로에 관한 사항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- 7.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
-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7. 6. 18.]

제5조(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)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0. 29.>

- 1.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
- 2.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

제6조(권한의 위임)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
<개정 2007. 6. 18., 2010. 7. 12., 2012. 6. 12., 2014. 9. 18., 2019. 10. 29.>

- 1. 법 제7조제1항・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・변경허가・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
- 2.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
- 3.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
- 4.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
- 5.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
- 5의2. 법 제21조제3항,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
- 5의3.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(법 제 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·통지
- 6.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
- 7.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
- 8.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・검사・질문
- 9.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
- 10.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

제6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 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0. 29.>

- 1.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

[본조신설 2012. 1. 6.]

제6조의3 삭제 <2018. 12. 24.>

제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3. 30.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30256호,2019. 12. 24.>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

제3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3 까지 생략

③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"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"을 "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"으로 한다.

38 부터40 까지 생략

제33조 생략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